

부산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4가단2155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피고B

변론 종결2024. 10. 29.

판결 선고2024. 11. 2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6.부터 2024. 11. 2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9,3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철 및 비철 자원거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었던 C의 배우자이다.

나. C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가불금 5,000,000원을 지급받고, 2021. 10. 6. 원고의 허가 없이 임의로 5,923,000원 상당의 구리를 매도하여 위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C는 원고에게 별지1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C는 파키스탄인으로 한글을 몰라서 피고의 자필로 대신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그 하단에 "자필자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라. C는 2022. 1. 3. 기존 가불금 3,500,000원과 임의로 고철을 판매한 6,500,000원 및 2022. 1. 3.자 차용금 1,000만 원을 합한 16,500,000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별지2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C는 파키스탄인으로 한글을 몰라서 배우자인 B의 자필로 대신하고 C는 같이 동석하였고, 보증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그 하단에 "자필자 및 보증인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마. C와 피고는 2022. 4. 4. 원고에게 C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매입대금 16,388,000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고, 2022. 4.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별지3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C와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 하단에 각자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서, 차용증, 지불각서에 따른 C의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기한 10,923,000원(= 5,000,000원 + 5,923,000원)에서 변제 받은 4,93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013,000원과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16,500,000원,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16,388,000원의 합계 39,381,000원<sup>1)</sup>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나. 판단

1)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서의 상단에는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C 본인이 원고에게 가불금 500만 원과 횡령금 5,923,000원을 변제하겠다는 것이며, 피고는 C가 한글을 몰라서 자신이 자필로 대신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그 하단에 자신을 "자필자"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기한 C의 채무에 대해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각서에 기한 6,013,000원의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서금이 6,013,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서금은 10,923,000원이므로, 그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930,000원을 공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5,993,000원(= 10,923,000원 - 4,930,000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보증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자필자 및 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16,5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지불각서는 이 사건 각서나 차용증과 달리 상단에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16,388,0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횡령금 16,388,000원을 2022. 4. 30.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로 제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C와 피고가 각각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C와 함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16,388,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및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합계 32,888,000원(= 16,500,000원 + 16,3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4. 4.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반호림**

별지

1) 원고가 구하는 6,013,000원 + 16,500,000원 + 16,388,000원의 합계액은 38,901,000원이다.